|  |  |  |
| --- | --- | --- |
| **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  (2015년 8월 31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17호로 공포되어, 2017년 11월 7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의 <일부 규장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경영허가 활동을 규율하고 식품 경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경영 활동과 요식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의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그에 대한 감독검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식품경영허가는 적법성,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편리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식품경영허가는 1기업 1증서 제도를 시행한다. 즉 동일 식품경영자가 동일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식품경영허가증은 하나만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경영 주체의 경영형태와 경영항목의 위험정도에 따라 식품경영에 대한 분류허가를 실시한다.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의 식품경영허가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경영허가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의 유형과 안전 리스크 상황에 근거하여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식품경영허가 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경영 허가 심사의 일반원칙을 책임지고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경영허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경영허가 심사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 추진하여 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 경영허가 사항을 공개하고 신청인이 전자문서 등 방식으로 경영허가를 신청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며 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접수  제9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영업집조 등 적법한 주체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은 영업집조에 기재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공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 민영비기업체, 기업 등이 사내식당을 개설하는 경우 공기관•사업기관 법인등기증, 사회단체등기증 또는 영업집조에 기재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10조 식품경영허가의 신청은 식품경영 주체의 경영형태와 경영항목 유형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식품경영 주체의 경영형태는 식품판매 경영자, 요식서비스 경영자, 사내식당으로 구분한다. 식품경영자가 온라인 방식의 경영, 중앙조리실 개설 또는 단체급식 배송 취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체의 경영형태 뒤에 묶음표를 달아 표시해야 한다.  식품경영항목은 사전포장식품 판매 (저온저장 식품•냉동저장식품 포함, 저온저장식품•냉동저장식품 불포함), 벌크식품 판매 (저온저장식품•냉동 저장식품 포함, 저온저장식품•냉동저장식품 불포함), 특수식품 판매(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기타 영유아용 조제식품), 기타 유형의 식품 판매; 가열식품 제조•판매, 냉식류 식품 제조•판매, 생식류 식품 제조•판매, 제과제빵류 식품 제조•판매, 자체제작 음료 제조•판매, 기타 유형의 식품 제조•판매 등으로 구분한다.  기타 유형의 식품 판매와 기타 유형의 식품 제조•판매에 편입되는 구체적인 품종은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열(熱), 냉(冷), 생(生), 고태(固態), 액태(液態) 등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식품은 식품안전 리스크 등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할 수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에 따라 식품경영항목의 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판매, 저장 등 장소를 보유하고 당해 장소의 환경 정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독•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소정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경영설비나 시설을 보유하고, 필요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방부, 방진, 파리•쥐•벌레 방지, 세척 및 오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저장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직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관리인력과 식품안전보장 규칙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합리적인 설비분포와 제조공정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식용 식품, 원료 및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물질, 불결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12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 신청서.  (2) 영업집조 또는 기타 주체자격 증명서류 복사본.  (3) 식품경영에 필요한 주요 설비시설 분포도, 조작절차 등 서류.  (4) 식품안전 점검, 종업원 건강관리, 입고검사 기록, 식품안전사고 처리 등 식품안전보장 규칙제도.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하여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동판매설비의 제품합격증명서, 상세한 설치장소, 경영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 공시방법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식품경영허가 신청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신청인은 사실대로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된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지고 신청서 등 서류상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를 때 신청 사항이 식품경영 허가 취득이 필요없는 사항일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불수리를 고지해야 한다.  (2) 법에 따를 때 신청 사항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신청서류에 즉석 수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수정된 위치에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정 일자를 표시한다.  (4)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과고지해야 한다. 즉석에서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서류 접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정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통보서를 발행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수리 통보서를 발행하여 불수리 이유를 설명함과 더불어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와 결정  제16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저온저장식품•냉동저장식품 불포함) 의 판매만을 신청하는 경우와 식품경영허가의 변경에 시설 및 분포의 변경이 동반되지 아니할 경우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장확인조사는 요구에 부합되는 최소 2명의 조사인력이 실시해야 한다. 조사인력은 유효한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식품경영허가 현장확인조사표와 현장확인조사 기록을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인력과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확인조사인력은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접수한 식품경영 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하급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인력은 현장확인조사 임무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경영현장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성해야 한다.  제17조 현장에서 바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내에 행정허가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연장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조사 등 상황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경영허가를 비준하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에 신청인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적시에 불허가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9조 식품경영허가증 발급일을 허가 결정일로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0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식품경영허가 신청이 공공이익의 중대한 사항과 연관되어 공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경영허가가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한 이익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내에 공청회 개최를 신청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20일(근무일 기준)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허가 심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4장 허가증 관리  제22조 식품경영허가증은 정본, 부본으로 구분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 부본 양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경영허가증 인쇄제작•발부 업무를 책임진다.  제23조 식품경영허가증에는 경영자의 명칭, 사회신용코드(자영업자의 경우 신분증 번호), 법정대표인(책임자), 주소, 경영장소, 주체의 경영형태, 경영항목, 허가증 고유번호, 유효기간, 일상 감독관리기구, 일상 감독관리인, 신고•제보전화, 발급기관, 발급인, 발급일자 및 2차원 바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경영장소 외부에 창고(자기보유 및 임차 포함)를 설치한 경우 부본에 창고의 상세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24조 식품경영허가증 고유번호는 JY('경영(經營)'의 병음 자모 이니셜)과 14자리 아랍숫자로 구성된다.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각각 1자리의 주체 경영형태, 2자리의 성(자치구•직할시) 번호, 2자리의 시(지) 번호, 2자리의 현(구) 번호, 6자리의 순서번호, 1자리의 검사번호를 의미한다.  제25조 일상 감독관리인이라 함은 식품경영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업무 인력을 의미한다. 일상 감독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서명•날인의 방식으로 허가증에 변경표시를 할 수 있다.  제26조 식품경영자는 식품경영허가증을 차질없이 보관해야 하며 위조, 변조, 매각, 임대, 대여,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식품경영자는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경영허가증 정본을 걸어놓거나 진열해야 한다.  제5장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및 말소  제27조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허가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식품경영자는 변화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경영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경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외부창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변경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식품경영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 변경 신청서.  (2)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3) 식품경영허가 변경 사항과 관련되 기타 서류.  제29조 식품경영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근무일 기준) 전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식품경영자는 식품경영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3)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 된 기타 서류.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피허가인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2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식품경영허가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경영조건의 변화가 없음을 성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변화 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는 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고 증서 발급일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일자로 하며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다.  제34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는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의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고 유효기간은 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가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겨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경영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의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5조 식품경영허가증이 분실, 파손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2) 식품경영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현급 이상 주요 매체에 등재한 분실공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식품경영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20일(근무일 기준)내에 식품경영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분실, 파손으로 인해 식품경영허가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허가증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며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과 일치하다.  제36조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을 종료하거나 식품경영허가가 철회, 취소되었거나 식품경영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3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말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 말소를 신청하는 식품경영자는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 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 말소 신청서.  (2)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3) 식품경영허가 말소와 관련된 기타 서류.  제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경영자의 주체자격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식품경영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 취소되었거나 식품경영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식품경영허가 사항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법률•법규에 규정한 식품경영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식품경영허가가 말소된 경우 해당 허가증 고유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식품경영허가증의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및 말소와 관련된 절차는 이 방법 제2장과 제3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감독검사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법률•법규에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경영자의 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0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식품허가 관리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사회조직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경영허가 발급, 허가 사항 검사, 일상 감독검사, 허가불법행위 조사 등 상황을 식품경영자 식품안전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식품경영자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빈도를 늘려야 한다.  제41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의 일상 감독관리인은 관할대상 식품경영자의 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식품저장•물류기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상 감독관리인은 규정된 빈도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식품경영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제42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와 그 업무인력은 식품경영허가 관리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자각적으로 식품경영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업무인력이 식품경영허가 관리 중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43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식품경영허가기록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경영허가 업무 처리 관련 서류, 허가증 발급 상황 등을 적시에 기록해야 한다.  제4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경영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식품경영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  제45조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46조 허가 신청인이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진실된 상황을 속이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준다. 신청인은 1년내에 식품경영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7조 피허가인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가 허가를 취소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피허가인은 3년내에 식품경영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경영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도, 임대, 대여, 양도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경영허가증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준다.  제49조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경영허가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방법 제27조 제2항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외부창고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을 종료하였거나 식품경영허가가 철회•취소되었거나 식품경영허가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50조 식품경영허가증이 취소된 식품경 영자 및 그 법정대표인, 직접담당자인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하거나 식품생산경영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직을 담당할 수 없다.  제51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허가를 부여하거나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를 부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52조 이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사내식당이라 함은, 공기관•사업기관• 사회단체•민영비기업체•기업 내부에 개설한 내부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집중급식을 제공하는 요식서비스 제공자를 지칭한다.  (2) 사전포장식품이라 함은, 사전에 정량 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와 용기내에 제작된 식품을 지칭하며, 사전에 정량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와 용기내에 정량제작되었으며 일정한 제한량 범위 내에서 품질 또는 체적 표시가 통일된 식품을 포함한다.  (3) 벌크식품이라 함은, 사전에 정량포장되지 않은 판매 시 계량이 필요한 식품을 지칭하며, 무포장식품과 비정량포장식품을 포함한다.  (4) 가열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를 간이가공 및 썰고 배합하여 찌기, 삶기, 끓이기, 부치기, 볶기, 굽기, 튀기기 등 조리방법으로 제작한 후 일정한 열도 상태에서 식용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지칭하며, 훠꿔(火鍋)와 구이 등 조리방식으로 가공완성된 식품 등을 포함한다.  (5) 냉식류 심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가열할 필요 없이 상온 또는 저온 상태에서 바로 식용이 가능한 식품을 지칭하며, 조제식품•훈제식품 및 생식류 과일•야채 그리고 절인식품 등을 포함한다.  (6) 생식류 식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으로 섭취하는 수산품을 특칭한다.  (7) 제과제빵류 식품이라 함은, 곡물•사탕• 오일•계란•우유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현장에서 베이킹•로스팅 등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식품을 지칭하며, 장식케익 등을 포함한다.  (8) 자체제작 음료라 함은, 경영자가 현장에서 제작한 각종 음료를 지칭하며, 아이스크림 등을 포함한다.  (9) 중앙조리실이라 함은, 요식업체가 개설한 독립 공간과 시설•설비를 보유하였고 식품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집중 가공제작하여 배송하는 식품경영자를 지칭한다.  (10) 단체급식 배송업체라 함은, 서비스 대상의 주문요구에 따라 식품을 집중 가공 및 배송하되 식사장소는 제공하지 않는 식품경영자를 지칭한다.  (11) 기타 유형의 식품이라 함은 지역적으로 판매되는 식품, 민족특색 식품, 지방특색 식품 등을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이라 함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분류관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 백화점,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장소에서 판매되는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을 지칭한다.  제53조 식품노점상 등에 대한 감독관리는 성•자치구•직할시가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방 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54조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경영허가증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제55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식품경영허가 관리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제작한 식품경영허가전자증서는 인쇄제작한 식품경영허가증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제57조 이 방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食品经营许可管理办法**  　　（2015年8月31日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17号公布；根据2017年11月7日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局务会议《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修正）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食品经营许可活动，加强食品经营监督管理，保障食品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食品销售和餐饮服务活动，应当依法取得食品经营许可。  　　食品经营许可的申请、受理、审查、决定及其监督检查，适用本办法。  　　第三条 食品经营许可应当遵循依法、公开、公平、公正、便民、高效的原则。  　　第四条 食品经营许可实行一地一证原则，即食品经营者在一个经营场所从事食品经营活动，应当取得一个食品经营许可证。  　　第五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按照食品经营主体业态和经营项目的风险程度对食品经营实施分类许可。  　　第六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监督指导全国食品经营许可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食品经营许可管理工作。  　　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食品类别和食品安全风险状况，确定市、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的食品经营许可管理权限。  　　第七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制定食品经营许可审查通则。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实施食品经营许可审查，应当遵守食品经营许可审查通则。  　　第八条 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加快信息化建设，在行政机关的网站上公布经营许可事项，方便申请人采取数据电文等方式提出经营许可申请，提高办事效率。  第二章 申请与受理  　　第九条 申请食品经营许可，应当先行取得营业执照等合法主体资格。  　　企业法人、合伙企业、个人独资企业、个体工商户等，以营业执照载明的主体作为申请人。  　　机关、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企业等申办单位食堂，以机关或者事业单位法人登记证、社会团体登记证或者营业执照等载明的主体作为申请人。  　　第十条 申请食品经营许可，应当按照食品经营主体业态和经营项目分类提出。  　　食品经营主体业态分为食品销售经营者、餐饮服务经营者、单位食堂。食品经营者申请通过网络经营、建立中央厨房或者从事集体用餐配送的，应当在主体业态后以括号标注。  　　食品经营项目分为预包装食品销售（含冷藏冷冻食品、不含冷藏冷冻食品）、散装食品销售（含冷藏冷冻食品、不含冷藏冷冻食品）、特殊食品销售（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乳粉、其他婴幼儿配方食品）、其他类食品销售；热食类食品制售、冷食类食品制售、生食类食品制售、糕点类食品制售、自制饮品制售、其他类食品制售等。  　　列入其他类食品销售和其他类食品制售的具体品种应当报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批准后执行，并明确标注。具有热、冷、生、固态、液态等多种情形,难以明确归类的食品，可以按照食品安全风险等级最高的情形进行归类。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可以根据监督管理工作需要对食品经营项目类别进行调整。  　　第十一条 申请食品经营许可，应当符合下列条件：  　　（一）具有与经营的食品品种、数量相适应的食品原料处理和食品加工、销售、贮存等场所，保持该场所环境整洁，并与有毒、有害场所以及其他污染源保持规定的距离；  　　（二）具有与经营的食品品种、数量相适应的经营设备或者设施，有相应的消毒、更衣、盥洗、采光、照明、通风、防腐、防尘、防蝇、防鼠、防虫、洗涤以及处理废水、存放垃圾和废弃物的设备或者设施；  　　（三）有专职或者兼职的食品安全管理人员和保证食品安全的规章制度；  　　具有合理的设备布局和工艺流程，防止待加工食品与直接入口食品、原料与成品交叉污染，避免食品接触有毒物、不洁物；  　　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十二条 申请食品经营许可，应当向申请人所在地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提交下列材料：  　　（一）食品经营许可申请书；  　　（二）营业执照或者其他主体资格证明文件复印件；  　　（三）与食品经营相适应的主要设备设施布局、操作流程等文件；  　　（四）食品安全自查、从业人员健康管理、进货查验记录、食品安全事故处置等保证食品安全的规章制度。  　　利用自动售货设备从事食品销售的，申请人还应当提交自动售货设备的产品合格证明、具体放置地点，经营者名称、住所、联系方式、食品经营许可证的公示方法等材料。  　　申请人委托他人办理食品经营许可申请的，代理人应当提交授权委托书以及代理人的身份证明文件。  　　第十三条 申请人应当如实向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提交有关材料和反映真实情况，对申请材料的真实性负责，并在申请书等材料上签名或者盖章。  　　第十四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申请人提出的食品经营许可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食品经营许可的，应当即时告知申请人不受理。  　　（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职权范围的，应当即时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申请人向有关行政机关申请。  　　（三）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申请人当场更正，由申请人在更正处签名或者盖章，注明更正日期。  　　（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在5个工作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当场告知的，应当将申请材料退回申请人；在5个工作日内告知的，应当收取申请材料并出具收到申请材料的凭据。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五）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要求提交全部补正材料的，应当受理食品经营许可申请。  　　第十五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申请人提出的申请决定予以受理的，应当出具受理通知书；决定不予受理的，应当出具不予受理通知书，说明不予受理的理由，并告知申请人依法享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三章 审查与决定  　　第十六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申请人提交的许可申请材料进行审查。需要对申请材料的实质内容进行核实的，应当进行现场核查。仅申请预包装食品销售（不含冷藏冷冻食品）的，以及食品经营许可变更不改变设施和布局的，可以不进行现场核查。  　　现场核查应当由符合要求的核查人员进行。核查人员不得少于2人。核查人员应当出示有效证件，填写食品经营许可现场核查表，制作现场核查记录，经申请人核对无误后，由核查人员和申请人在核查表和记录上签名或者盖章。申请人拒绝签名或者盖章的，核查人员应当注明情况。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委托下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受理的食品经营许可申请进行现场核查。  　　核查人员应当自接受现场核查任务之日起10个工作日内，完成对经营场所的现场核查。  　　第十七条 除可以当场作出行政许可决定的外，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行政许可的决定。因特殊原因需要延长期限的，经本行政机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10个工作日，并应当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  　　第十八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申请材料审查和现场核查等情况，对符合条件的，作出准予经营许可的决定，并自作出决定之日起10个工作日内向申请人颁发食品经营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应当及时作出不予许可的书面决定并说明理由，同时告知申请人依法享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十九条 食品经营许可证发证日期为许可决定作出的日期，有效期为5年。  　　第二十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认为食品经营许可申请涉及公共利益的重大事项，需要听证的，应当向社会公告并举行听证。  　　第二十一条 食品经营许可直接涉及申请人与他人之间重大利益关系的，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作出行政许可决定前，应当告知申请人、利害关系人享有要求听证的权利。  　　申请人、利害关系人在被告知听证权利之日起5个工作日内提出听证申请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在20个工作日内组织听证。听证期限不计算在行政许可审查期限之内。  第四章 许可证管理  　　第二十二条 食品经营许可证分为正本、副本。正本、副本具有同等法律效力。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制定食品经营许可证正本、副本式样。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食品经营许可证的印制、发放等管理工作。  　　第二十三条 食品经营许可证应当载明：经营者名称、社会信用代码（个体经营者为身份证号码）、法定代表人（负责人）、住所、经营场所、主体业态、经营项目、许可证编号、有效期、日常监督管理机构、日常监督管理人员、投诉举报电话、发证机关、签发人、发证日期和二维码。  　　在经营场所外设置仓库（包括自有和租赁）的，还应当在副本中载明仓库具体地址。  　　第二十四条 食品经营许可证编号由JY（“经营”的汉语拼音字母缩写）和14位阿拉伯数字组成。数字从左至右依次为：1位主体业态代码、2位省（自治区、直辖市）代码、2位市（地）代码、2位县（区）代码、6位顺序码、1位校验码。  　　第二十五条 日常监督管理人员为负责对食品经营活动进行日常监督管理的工作人员。日常监督管理人员发生变化的，可以通过签章的方式在许可证上变更。  　　第二十六条 食品经营者应当妥善保管食品经营许可证，不得伪造、涂改、倒卖、出租、出借、转让。  　　食品经营者应当在经营场所的显著位置悬挂或者摆放食品经营许可证正本。  第五章 变更、延续、补办与注销  　　第二十七条 食品经营许可证载明的许可事项发生变化的，食品经营者应当在变化后10个工作日内向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申请变更经营许可。  　　经营场所发生变化的，应当重新申请食品经营许可。外设仓库地址发生变化的，食品经营者应当在变化后10个工作日内向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第二十八条 申请变更食品经营许可的，应当提交下列申请材料：  　（一）食品经营许可变更申请书；  　（二）食品经营许可证正本、副本；  　（三）与变更食品经营许可事项有关的其他材料。  　　第二十九条 食品经营者需要延续依法取得的食品经营许可的有效期的，应当在该食品经营许可有效期届满30个工作日前，向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  　　第三十条 食品经营者申请延续食品经营许可，应当提交下列材料：  　（一）食品经营许可延续申请书；  　（二）食品经营许可证正本、副本；  　（三）与延续食品经营许可事项有关的其他材料。  　　第三十一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被许可人的延续申请，在该食品经营许可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  　　第三十二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变更或者延续食品经营许可的申请材料进行审查。  　　申请人声明经营条件未发生变化的，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不再进行现场核查。  　　申请人的经营条件发生变化，可能影响食品安全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就变化情况进行现场核查。  　　第三十三条 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决定准予变更的，应当向申请人颁发新的食品经营许可证。食品经营许可证编号不变，发证日期为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作出变更许可决定的日期，有效期与原证书一致。  　　第三十四条 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决定准予延续的，应当向申请人颁发新的食品经营许可证，许可证编号不变，有效期自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作出延续许可决定之日起计算。  　　不符合许可条件的，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作出不予延续食品经营许可的书面决定，并说明理由。  　　第三十五条 食品经营许可证遗失、损坏的，应当向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申请补办，并提交下列材料：  　（一）食品经营许可证补办申请书；  　（二）食品经营许可证遗失的，申请人应当提交在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网站或者其他县级以上主要媒体上刊登遗失公告的材料；食品经营许可证损坏的，应当提交损坏的食品经营许可证原件。  　　材料符合要求的，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在受理后20个工作日内予以补发。  　　因遗失、损坏补发的食品经营许可证，许可证编号不变，发证日期和有效期与原证书保持一致。  　　第三十六条 食品经营者终止食品经营，食品经营许可被撤回、撤销或者食品经营许可证被吊销的，应当在30个工作日内向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申请办理注销手续。  　　食品经营者申请注销食品经营许可的，应当向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提交下列材料：  　（一）食品经营许可注销申请书；  　（二）食品经营许可证正本、副本；  　（三）与注销食品经营许可有关的其他材料。  　　第三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食品经营者未按规定申请办理注销手续的，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办理食品经营许可注销手续：  　　（一）食品经营许可有效期届满未申请延续的；  　　（二）食品经营者主体资格依法终止的；  　　（三）食品经营许可依法被撤回、撤销或者食品经营许可证依法被吊销的；  　　（四）因不可抗力导致食品经营许可事项无法实施的；  　　（五）法律法规规定的应当注销食品经营许可的其他情形。  　　食品经营许可被注销的，许可证编号不得再次使用。  　　第三十八条 食品经营许可证变更、延续、补办与注销的有关程序参照本办法第二章和第三章的有关规定执行。  第六章 监督检查  　　第三十九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依据法律法规规定的职责，对食品经营者的许可事项进行监督检查。  　　第四十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食品许可管理信息平台，便于公民、法人和其他社会组织查询。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将食品经营许可颁发、许可事项检查、日常监督检查、许可违法行为查处等情况记入食品经营者食品安全信用档案，并依法向社会公布；对有不良信用记录的食品经营者应当增加监督检查频次。  　　第四十一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日常监督管理人员负责所管辖食品经营者许可事项的监督检查，必要时，应当依法对相关食品仓储、物流企业进行检查。  　　日常监督管理人员应当按照规定的频次对所管辖的食品经营者实施全覆盖检查。  　　第四十二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履行食品经营许可管理职责，应当自觉接受食品经营者和社会监督。  　　接到有关工作人员在食品经营许可管理过程中存在违法行为的举报，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进行调查核实。情况属实的，应当立即纠正。  　　第四十三条 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食品经营许可档案管理制度，将办理食品经营许可的有关材料、发证情况及时归档。  　　第四十四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可以定期或者不定期组织对全国食品经营许可工作进行监督检查；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定期或者不定期组织对本行政区域内的食品经营许可工作进行监督检查。  第七章 法律责任  　　第四十五条 未取得食品经营许可从事食品经营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二条的规定给予处罚。  　　第四十六条 许可申请人隐瞒真实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食品经营许可的，由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申请人在1年内不得再次申请食品经营许可。  　　第四十七条 被许可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食品经营许可的，由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撤销许可，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被许可人在3年内不得再次申请食品经营许可。  　　第四十八条 违反本办法第二十六条第一款规定，食品经营者伪造、涂改、倒卖、出租、出借、转让食品经营许可证的，由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违反本办法第二十六条第二款规定，食品经营者未按规定在经营场所的显著位置悬挂或者摆放食品经营许可证的，由县级以上地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给予警告。  　　第四十九条 违反本办法第二十七条第一款规定，食品经营许可证载明的许可事项发生变化，食品经营者未按规定申请变更经营许可的，由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违反本办法第二十七条第二款规定或者第三十六条第一款规定，食品经营者外设仓库地址发生变化，未按规定报告的，或者食品经营者终止食品经营，食品经营许可被撤回、撤销或者食品经营许可证被吊销，未按规定申请办理注销手续的，由原发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下罚款。  　　第五十条 被吊销经营许可证的食品经营者及其法定代表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自处罚决定作出之日起5年内不得申请食品生产经营许可，或者从事食品生产经营管理工作、担任食品生产经营企业食品安全管理人员。  　　第五十一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不符合条件的申请人准予许可，或者超越法定职权准予许可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第一百四十四条的规定给予处分。  第八章 附 则  　　第五十二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一）单位食堂，指设于机关、事业单位、社会团体、民办非企业单位、企业等，供应内部职工、学生等集中就餐的餐饮服务提供者；  　　（二）预包装食品，指预先定量包装或者制作在包装材料和容器中的食品，包括预先定量包装以及预先定量制作在包装材料和容器中并且在一定量限范围内具有统一的质量或体积标识的食品；  　　（三）散装食品，指无预先定量包装，需称重销售的食品，包括无包装和带非定量包装的食品；  　　（四）热食类食品，指食品原料经粗加工、切配并经过蒸、煮、烹、煎、炒、烤、炸等烹饪工艺制作，在一定热度状态下食用的即食食品，含火锅和烧烤等烹饪方式加工而成的食品等；  　　（五）冷食类食品，指一般无需再加热，在常温或者低温状态下即可食用的食品，含熟食卤味、生食瓜果蔬菜、腌菜等；  　　（六）生食类食品，一般特指生食水产品；  　　（七）糕点类食品，指以粮、糖、油、蛋、奶等为主要原料经焙烤等工艺现场加工而成的食品，含裱花蛋糕等；  　　（八）自制饮品，指经营者现场制作的各种饮料，含冰淇淋等；  　　（九）中央厨房，指由餐饮单位建立的，具有独立场所及设施设备，集中完成食品成品或者半成品加工制作并配送的食品经营者；  　　（十）集体用餐配送单位，指根据服务对象订购要求，集中加工、分送食品但不提供就餐场所的食品经营者；  　　（十一）其他类食品，指区域性销售食品、民族特色食品、地方特色食品等。  　　本办法所称的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是指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按照分类管理原则确定的可以在商场、超市等食品销售场所销售的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  　　第五十三条 对食品摊贩等的监督管理，按照省、自治区、直辖市制定的具体管理办法执行。  　　第五十四条 食品经营者在本办法施行前已经取得的许可证在有效期内继续有效。  　　第五十五条 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本行政区域实际情况，制定有关食品经营许可管理的具体实施办法。  　　第五十六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制作的食品经营许可电子证书与印制的食品经营许可证书具有同等法律效力。  　　第五十七条 本办法自2015年10月1日起施行。 |